

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8893    |
| 의 퇴 인  | 김미애의원      |
| 회 답 일  | 2026.6.29. |
| 추 계 번호 | 26B2552    |

#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, 이들 가구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억 3,600만원, 2031년 5억 7,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8억 6,700만원(연평균 3억 7,3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안 제16조의3 신설<br>(복합위기 1인가구<br>종합분석 연구) | 204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204   | 41  |
| 안 제20조<br>(주거실태조사:복합<br>위기 1인가구)      | 532  | —    | 554  | —    | 576  | 1,663 | 333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36  | —    | 554  | —    | 576  | 1,867 | 373 |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,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이므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Ⅱ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제3조<br>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            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br>2.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층·지원대상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)· <u>복합위기 1인가구(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복합위기 1인가구를 말한다)</u>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(이하 “주거지원필요계층”이라 한다)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16조의3 신설<br>(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지원 등)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(이하 “복합위기 1인가구”라 한다)의 생성 원인, 생애주기별 특성,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(제1항)<br>1.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<br>2.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<br>3.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      | 의무규정 |
| 3  | 안 제20조<br>(주거실태조사)                  |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.(제2항)<br>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·자산·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( <u>복합위기 1인가구를 포함한다</u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조문 | 재정수반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<br>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제3조<br>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               | —        | • (미대상)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재정지원 규정에서 추계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16조의3 신설<br>(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지원 등) | ○        | •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함<br>— 다만,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은 이들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, 지원대책 등이 구체화될 것이므로 현시점에서는 추계에서 제외함 |
| 3  | 안 제20조<br>(주거실태조사)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• (추계)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, 이들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개정안의 시행으로 종합분석 연구용역과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대상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
-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종합분석은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며, 이들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시행 범위 및 방법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이를 구체화하기 곤란하나, 현행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중 별도 조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조사<sup>1)</sup> 실시

1)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제2항의 별도 조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격년에 1회씩 혹은 비정기적으로 특

사례를 준용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

- 2024년에 실시된 주거실태조사(특수조사)를 참고하여 표본수 6,7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아동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- 국토교통부는 2024년 주거취약계층인 지하·반지하 등 거주가구의 경향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6,700가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음(5억원, 비정기적 조사)

□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<sup>2)</sup>

□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복합위기 1인가구 연구조사

- (추계대상) 개정안에 따라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산함
  - (유사사례) 최근 실시된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비 평균은 2억 400만원으로 나타나며, 추계 첫 해인 2027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유사사례 사업비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요기관     | 사업년도 | 사업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
| 1인가구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회미래연구원  | 2026 | 262 |
|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  | 서울시 복지재단 | 2026 | 100 |
| 성남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<br>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| 경기도 성남시  | 2026 | 250 |
|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204 |

자료: 조달청 나라장터

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음

2)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(2025.11.)

|   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(%) | 2.0  | 1.9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4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복합위기 1인가구 종합분석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  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복합위기 1인가구<br>종합분석 연구용역 실시 | 204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204 |

#### 나. 주거실태조사(복합위기 1인가구)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 실시비용으로 조사대상 표본 수에 조사비 단가를 곱하여 추산함
  - (추계대상)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표본수는 지하·반지하 등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(특수조사) 사례를 참고하여 6,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   - 표본 수 6,700가구, 실시주기는 2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
  - (조사비 단가) 조사비 단가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에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특수가구 조사비 단가(75,000원)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산
- 이상의 가정에 따라 추계한 결과,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4] 복합위기 1인가구 별도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|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  | 2028 | 2029   | 2030 | 2031  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
| 조사 대상<br>(가구, A)      | 6,700  | —    | 6,700  | —    | 6,700  | —     |
| 조사비 단가<br>(가구당, 원, B) | 79,474 | —    | 82,685 | —    | 86,026 | —     |
| 주거실태조사<br>(A×B, 백만원)  | 532    | —    | 554    | —    | 576    | 1,663 |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의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,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## 다. 추계결과

- (일부추계) 이상의 가정에 따라 추계한 결과,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, 이들 가구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|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복합위기 1인가구<br>종합분석 연구 | 204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204   |
| 복합위기 1인가구<br>실태조사    | 532  | —    | 554  | —    | 576  | 1,663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| 736  | —    | 554  | —    | 576  | 1,867 |

## 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,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문지은 | 예승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 문지은 | 02-6788-4645 | mtsophia@assembly.go.kr |

## [참고자료] 주거실태조사 개요<sup>3)</sup>

### □ 법적 근거

- (근거) 「주거기본법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('06년부터 실시\*)

### □ 목적

-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주택정책 수립, 주거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

### □ (조사대상)

- 일반가구, 특성가구(청년, 신혼부부, 고령, 장애인, 소득하위가구)
  - － 주거실태조사는 일반조사와 정책조사(특수가구조사)로 구분하여 일반조사는 짝수해, 정책조사는 홀수해에 실시하였으며, 2017년 이후 일반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음
- 2017년 이후부터는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고령·저소득 등의 특수가구조사는 일반가구 조사에 포함하여 시행하였음

### □ (조사범위) 17개 시도(세종시 포함, 제주도 이외의 도서지역은 제외)

### □ (조사내용) 점유형태, 생애최초주택마련 경험, 주택구입가격·임차료 등, 주택면적·시설 등 주거환경, 이사계획, 가구소득·구성·자산 현황 등

- (표본 수) 일반가구: 61,000가구, 특성가구(8,000~10,000가구)
  - － 청년, 신혼부부는 2020년부터 일반가구에 포함하여 매년 실시
- (조사주기) 매년(일반가구), 격년 혹은 비정기(특성가구)
  - － 2006부터 짝수년 주기로 진행(표본 2만가구) 하여 왔으나, 2017년부터 표본 확대(2만→6만)와 함께 매년 추진 중에 있음
- (조사방식) 1:1 가구 면접조사
- (기관) 국토연구원, 한국리서치

---

3) 국토교통부 제출자료.

[주거실태조사 표본수 및 조사현황]

|      | 일반조사 | 조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표본수    | 조사주기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
| 일반조사 | 2006 | 일반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,000 | 격년   |
|      | 2008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,000 |      |
|      | 201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,000 |      |
|      | 2012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,000 |      |
|      | 2014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,000 |      |
|      | 2016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,000 |      |
|      | 2017 | 일반가구<br>(청년, 신혼부부, 고령, 저소득가구 포함) | 60,000 | 매년   |
|      | 2018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1,000 |      |
|      | 2019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1,000 |      |
|      | 202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1,000 |      |
|      | 2021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1,000 |      |
|      | 2022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,000 |      |
|      | 2023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1,000 |      |
|      | 2024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1,000 |      |
|      | 2025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1,000 |      |
| 특수조사 | 2007 | 노인가구 및 장년가구                      | 25,000 | 격년   |
|      | 2009 | 장애인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,000 |      |
|      | 2011 | 임대주택 거주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| 60,000 |      |
|      | 2013 | 저소득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,000 |      |
|      | 2015 | 장애인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,000  |      |
|      | 2017 |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 <sup>4)</sup>        | 8,000  | 비정기  |
|      | 2019 | 장애인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000  | 비정기  |
|      | 2022 | 비주택주거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| 8,000  | 비정기  |
|      | 2023 | 장애인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,700  | 비정기  |
|      | 2024 | 비주택주거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| 6,700  | 비정기  |

자료: 국토교통부, 「2024년 주거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」, 2025년 및 국토교통부 예산사업설명자료

□ (예산) 주거실태조사 예산현황: 2022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| 2022  | 2023  | 2024  | 2025  | 2026 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주거실태조사 예산 | 3,155 | 3,480 | 3,450 | 2,950 | 2,554 |

4) 주택이외의 거처: 오피스텔, 고시원, 판잣집,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, 움막, 기타  
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은 상가, 공장, 여관 등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지만,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 (방, 부엌, 독립된 출입구)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주택(주거용 면적 < 영업용 면적)